노총연구원 연구서 87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인식과 대응

이 호 창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발 간 사

DJ정부는 외환위기와 이로 인한 IMF구제금융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하에서 출범하

2001. 1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 원 장 이 남 순

<제목차례>

1. 들어가는 말 ····· 1

2. 세계경제체제의 흐름과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 4
   1) 세계화와 지역주의 ····· 4
   2) 자본 중심의 세계화 ····· 9
   3)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인식 ····· 13

3. 한일투자협정 논의의 현황과 문제점 ····· 16
   1) 한일투자협정의 추진과정과 문제점 ····· 16
   2) 한일투자협정의 내용과 문제점 ····· 19

4. 한일투자협정과 한일자유무역협정의 효과에 대한 전망 ····· 26
   1) 경제적 효과 ····· 26
   2)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한 영향 ····· 39

5.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대응방안 ····· 44
   1) 기존의 입장 평가와 '비판적 개입'의 필요성 ····· 44
   2) 사회적 조항을 통한 비판적 개입 ····· 48

<참고문헌> ····· 52

【부록 1】 NAFTA 노동부속협정(NAALC)의 문제점 ····· 54
【부록 2】 한일투자협정과 관련된 렌고(일본노총)의 입장 ····· 69
【부록 3】 미-요르단 자유무역협정의 노동관련조항(제6조) ····· 73

1. 들어가는 말

세계화는 이 시대의 흐름을 가리키는 핵심적인 용어들 중의 하나이다. 동시에 세계화는 오늘날 가장 많은 논란과 대립을 야기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세계화를 옹호하는 자들에게 모든 부문에 걸쳐 상품과 자본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것은 경제의 효율성과 국민복리를 증진시키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세계화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지금의 세계화는 초국적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며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파괴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일 뿐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세계화의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사회운동 진영간에는 상당한 대립이 존재한다. 정부는 세계화가 한국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정부의 자세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회운동 진영은 지금의 세계화에 대한 참여는 한국경제의 종속을 강화시키고 노동자와 민중의 고통을 증대시킬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은 그 동안 세계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WTO 중심의 다자주의 해법을 지지하면서 이에 배치될 수 있는 지역협정을 추진하거나 그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WTO 중심의 다자간 협상과는 별도로 세계의 많은 지역과 국가에서 지역협정이 활성화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한국 정부도 지역·국가간 협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들어 한일투자협정, 한미투자협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등 일련의 양자간 협정 체결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일련의 양자간 협상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노동·농민·사회단체 등은 이들 협정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노동자와 민중의 고통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협정체결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검토하려고 하는 한일투자협정에 대해서도 정부와 사회운동진영 간에는 상당한 시각 차가 존재한다. 정부는 한일투자협정을 통해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일본자본의 대한(對韓)투자를 확대·유치"할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사회운동단체들은 "한국경제의 자주적 발전의 저해와 대일구조적 종속의 심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한일투자협정 속에 다른 데서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삽입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 역시 한일투자협정의 행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고 그에 대한 노동운동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한일투자협정이 어떤 맥락 속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또한 한일투자협정이 향후 한국 경제와 노동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찰하고, 그와 관련해 노동운동은 한일투자협정에 대해 어떤 입장과 전략을 갖고 대응할 것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한일투자협정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다른 양자간 협정과 유사한 부분이 있고, 세계화의 전반적인 동향 및 성격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본 연구는 제반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세계화에 대한 다른 논의에도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세계화의 동향과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성격에 대해 살펴본다. 세계화 속에서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경향과 자본 중심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 3장에서는 한일투자협정 논의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한다. 한일투자협정 협상이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 내용이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협상 전개과정 및 투자협정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한다. 4장에서는 한일투자협정과 한일자유무역협정의 효과에 대해 전망한다. 한일투자협정 과 한일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한일투자협정과 한일자유무역협정이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고찰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한일투자협정에 대해 노동운동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노동운동의 '비판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비판적 개입'의 일환으로서 투자협정 속에 사회적 조항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한다.

2. 세계경제체제의 흐름과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이 장에서는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우리가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중요한 점은 그것을 복합적이고 현실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현실과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문제간에는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어느 한 방향에서만 접근할 때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다른 부분을 놓칠 수 있다.

무엇보다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세계경제체제의 흐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세계경제체제에서는 세계화가 진행되는 한편 지역주의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투자의 흐름을 자유화하며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더욱 보호하려고 하는 자본 중심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1) 세계화와 지역주의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는 19세기 이후 세계화와 관련해 두 번의 큰 상승기류를 경험했다. 첫 번째는 1820~1914년 기간이며 두 번째는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이다. 19세기의 세계화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생산력의 증대를 기반으로 일어났으며 영

국이 이를 주도했다. 그 후 보호주의의 강화 및 세계대전으로 세계화의 흐름이 주춤했으나 다시 1960년대 이후 세계화가 확대되고 있다. 몇 가지 지표를 통해 1960년대 이후 세계화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1960년대 이후 GDP 성장률은 약 3~4% 선을 유지했으나 수출물량 증가율은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있었던 1980~85년 기간을 제외하면 세계 GDP 증가율의 약 2배에 이르고 있다. 직접투자 증가율은 1970년대에는 14% 이상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1980년대 전반기에도 4.9%에 이르렀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기에는 다시 14% 이상 증가하였다. 국제 금융대출은 이 보다 더 빨리 증가하여 1960~70년대 기간에는 30% 수준을 유지했고 80년대 이후에는 12% 선을 기록하였다(표 1 참조).

<표 1> 국제경제활동 증가율 지표

(단위:%)

	수출물량	직접투자 흐름	국제금융 (대출)	세계GDP
1964~1973	9.2	n.a	34.0	4.6
1973~1980	4.6	14.8	26.7	3.6
1980~1985	2.4	4.9	12.0	2.6
1985~1994	6.7	14.3	12.0	3.2

자료 : J. Perraton, D. Goldblatt, D. Held and A. McGrew, “The Globalisation of Economic Activity”, New Political Economy, Vol. 2, No. 2, 1997.
박번순, 전영재(2001)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1960년대 이후 전반적인 세계화의 흐름이 강해지고 있는 한편, 1990년대 이후부터는 지역경제통합, 지역블록화가 세계경제체제의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전후 세계화는 기본적으로 경제질서를 구축함에 있어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들을 포괄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원리에 입각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특정 국가집단이나 지역 내에서 경제블록이 구축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가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며 확대되고 있다.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를 보면, 1948년 이후 1989년까지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누계가 77개인데 비해 1990년~1999년까지의 지역무역협정은 무려 132개에 이르고 있다. WTO 회원국 132개국 중 100개 국가가 통보된 지역무역블럭에 가담하고 있으며, 104개 회원국은 미통보된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38개의 비WTO 회원국도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블럭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2>는 최근의 대표적인 지역경제통합·자유무역지대의 형성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면서 현재 주요교역국 중에서 지역경제권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 일부에 불과하게 되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블록을 구성하지 않았던 데는 이질적인 사회체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불신감, 한일 양국에 대한 미국 헤게모니의 영향 등과 함께 한국과 일본이 WTO중심의 다자주의 원칙을 지지하면서 이에 배치될 수 있는 지역주의를 경계했기 때문이다.[1)]

---

1)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의 관계를 어떻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WTO중심의 다자주의를 원칙적으로는 지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적으로 자국의 이해를 위해 지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면서 한국과 일본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긴밀한 경제협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2)]

세계화 속에서의 지역주의의 확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다자주의와 달리 지역주의는 지역블록에 들어있는 역내(域內)국가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역외(域外)국가들을 차별함으로써 역외국가들을 역내국가에 비해 무역 및 투자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기 때문이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무역 및 투자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과거에는 주로 지역주의를 다자주의와 배치되는 개념, 즉 다자주의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지역주의와 다자주의를 보완적인 개념, 즉 지역주의를 다자주의로 가는 디딤돌로 평가하는 견해도 많다. 세계화, 다자주의, 지역주의의 개념과 그것들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박번순, 전영재(2001) 참조.

2) "한·중·일 경제의 지리적 근접성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3국 경제의 상호보완성 등을 고려할 때 3국간의 경제협력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의 경제협력 수준은 유럽이나 북미지역 등에 비해 크게 뒤지 상태이다.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지역주의의 흐름에 대응하고 세계무역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정인교 외 1999 : 27)

<표 2> 지역무역협정의 심화와 확대

지역 무역 협정	동 향	출 범
유럽 연합 (EU)	- EU의 확대 o 1995년 : 12개국 +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o 2000년 : 15개국 + 동구권 6개국 - 새로운 협정 추진 및 협정간의 연계 노력 o 2005년 : EU + 남미공동시장 자유무역지대 o 2010년 : EU + 지중해연안 12개국 자유무역 지대 o 북미-유럽간 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 (TAFTA) 구상 -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확대 노력 o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출범	1993년 11월 1일 유럽연합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명칭이 종전 EC에서 EU로 변경됨 ; 1958년 6개 회원국으로 출범하였으며 1995년까지 4차례의 확대를 통하여 현재 15개국에 이름
북미자 유무역 협정 (NAFTA)	- NAFTA의 확대 노력 o 칠레의 NAFTA 가입 협상 진행 - 새로운 협정 추진 o 2005년 : 북남미 34개국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설립 협상 진행 - 협정간의 연계노력 o북미-유럽간자유무역지대(TAFTA) 구상 o NAFTA-AFTA간의 대화채널가동 - 아시아 지역과 협력 확대 지속 o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PEC)의 무역투자 및 자유화의 가속화	1994년 1월 1일 정식발효

<표 계속>

지역 무역 협정	동 향	출 범
아세안 자유 무역 지대 (AFTA)	- AFTA의 확대 및 연계 노력 o 1995년 : 6개국 + 베트남 o 1997년 : 미얀마, 캄보니아, 라오스 추가영입 o AFTA와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자유무역지대(CER)과 연계논의진행	1992년 제 4 차 ASEAN 정상회의에서 1993년을시작으로 FTA 창설 합의
남미 공동 시장 (MERCOSUR)	- MERCOSUR의 확대 및 협정간의 연계 노력 o EU + MERCOSUR 자유무역지대 구상 o MERCOSUR 과 CER의 연계 논의진행	1995년 1월 1일 출범

출처 : 정인교(1998 : 3)

2) 자본 중심의 세계화

오늘날 세계경제체제에서는 자본·투자자 중심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자본의 흐름은 자유화하며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협의 이해는 충분히 보장되는 반면 투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노동권이나 환경권과 같은 사회적 권리나 투자유치국의 주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자본·투자자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중시하는 세계화는 '모두를 위한 세계화'가 아니라 '자본을 위한 세계화'일 뿐이다. 이런 방식의 세계화가 지속된다면 세계의 양극화, '20:80 사회'로의 분열이 심화되게 될 것이다.

최근 세계화가 자본과 투자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투자협정에 대한 일련의 국제적 논의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1995년부터 OECD에서 논의되다 미국과 EU국가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1998년 말에 중단된 '다자간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f investment : 이하에서는 MAI로 줄임)'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MAI는 투자협정의 최근 동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중단된 이후로도 많은 투자협정의 내용에 전범으로 활용되고 있

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하에서는 MAI 초안[3]에 담긴 핵심적인 내용과 그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이창근 2000).

1) '투자자' 및 '투자'의 개념이 매우 폭넓게 정의되어 있다. '투자자'의 경우 개인이든 법인이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 하지 않든,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모든 부분들이 투자자에 해당한다. 또한 '투자'의 경우 주식, 채권, 지적재산권 등 모든 형태의 자산이 투자로 간주된다.
2) 기존의 투자보장협정과는 달리 투자자는 '투자이전단계(pre-establishment)' 에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이것은 정부가 갖고 있는 고유한 권리, 즉 특정한 외국투자가 자국의 국민경제에 필요한지 사회적 이해에 부합되는지를 심사하고 그것의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3) 해외투자자들과 국내투자자들, 또한 해외투자자들과 해외투자자들 사이에 차별을 금지시키고 있다(차별금지원칙). 전자를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후자를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라 한다. 그런데 MAI에서는 사회적·국민경제적 필요에 따른 정부정책까지도 차별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투자문제와 관련된 정당한 정부정책의 실행마저도 제약하고 있다.
4) 어떤 경우라도 외국투자자의 기업활동에 '조건'을 덧붙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이행의무부과 금지원칙'). 기술이전, 현

3) MAI 초안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많은 내용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들어가 있다.

지생산품(local contents) 사용의무, 일정비율 이상의 현지인 고용의무 등 투자유치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요구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이행의무부과 금지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배제되고 있다.

5) 외국투자자를 위한 정치적 보호수단으로 '점진적 철폐(rollback)', '현상동결(standstill)'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MAI규약과 충돌하는 국내법 및 제도들이 점점 축소되어 최종적으로는 철폐되어야 하며(점진적 철폐) 미래에도 협정조인국들은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 어떤 새로운 법률, 정책, 또는 계획을 도입하지 못한다(현상동결)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들은 개별국가가 일단 자유화·개방화의 길을 선택한 뒤에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도록 강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고안된 것이다.

6) 분쟁해결절차의 일환으로 투자자가 국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나 투자자산에 대해 손실을 입히거나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정부조치에 대해서 외국투자자는 정부를 직접 제소할 권리를 가진다. 심지어 계획된 투자에 제한을 가하는 것조차 경쟁기회의 박탈, 미래소득의 수용이라는 이유로 제소가 될 수 있다. 분쟁해결에 있어 외국투자자의 권리가 국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4)]

---

4) 이 조항은 NAFTA에도 들어있는데 실제로 거기서는 이 부분을 활용한 소송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에틸사(Ethyl Corp.)의 캐나다정부 제소건이다. 미국의 에틸사는 엔진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가솔린에 첨가하는 유독물질인 MMT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그런데 캐나다 의회는 MMT가 연소될 때 배출되는 물질이 사람들의 건강에 치명적이

이상과 같은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MAI 초안은 자본과 투자자의 이익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반면, 투자유치국 정부의 경제·사회·노동분야 등에서의 정책적 수단을 제약하고 있다. '초국적자본의 권리헌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투자자의 권리를 정부·지역사회·시민·노동자·환경의 권리보다 우위에 놓은 MAI의 자본편향성은 각국 노조 및 사회·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1998년 10월에는 미국과 EU국가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논의가 중단되게 되었다. 하지만 MAI에 대한 논의는 비록 중단되었지만 MAI 초안에 담긴 내용은 다른 투자협정에 전범으로 활용되며 지금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MAI는 최근의 세계화가 자본과 투자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논의되며 진행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3)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인식

라고 판단하여 캐나다 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97년 이 물질의 수입 및 캐나다 내 운송금지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에틸사는 NAFTA의 투자자보호조항에 근거해 국제분쟁해결센터에 캐나다 정부를 제소했다. 그들의 제소근거는 MMT 생산단지 및 기업의 명성을 캐나다 정부가 수용(expropriation)했다는 것이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수입금지조치를 철회하고, 약 13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에틸사에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등 공공이익에 대한 판단은 고려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세계경제체제의 흐름은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세계화 속에서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이 한국경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적응전략(adaptive strategy)'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총수요에서 수출 및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7%(98년)에 이를 정도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상황[5]과, 자원 및 경제구조의 조건상 향후에도 기본적으로 개방경제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경제의 특징을 감안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그것에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세계화 속에서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고 할 때 지역주의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주요교역국가들과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지역주의가 무역 및 투자에서 역외국가들을 역내국가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들과의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은 지역주의로 인한 차별을 회피하고 유리한 교역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양자간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은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경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적응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측면은 작금의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이 노동권이나 환경권과 같은 사회적

---

5) 총수요에서 수출 및 수입이 차지하는 대외의존도는 1990년 23.2%, 1995년 24.9%와 비교할 때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일본의 9.1%(95년), 미국의 12.1%(97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에 와있다.

권리는 뒷전에 놓은 채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자본 중심의 세계화라는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자본 중심의 세계화는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손상하기 때문에 결코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최소한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이 자본과 투자자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시민의 사회적 권리도 존중하는 것이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비판적 개입(critical engagement)'이 필요하다.

요컨대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문제에 접근할 때는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이 세계화 시대의 한국경제의 '적응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는 점과,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이 자본 중심의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 어느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3. 한일투자협정 논의의 현황과 문제점

이 장에서는 한일투자협정 논의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한일투자협정 협상이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그 내용이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협상 전개과정 및 투자협정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1) 한일투자협정의 추진과정과 문제점

한일투자협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말 무렵부터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대통령의 일본방문시 열린 한일정상회담(1998.10.8)에서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을 위한 행동계획」을 합의했는데, 여기서는 한일투자교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문화하였다. "양국은 '민관합동투자촉진협의회'를 개최함과 함께 한일 쌍방의 투자상담 또는 투자분쟁처리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투자촉진을 도모할 수 있는 민관 일체의 기구를 설치한다. 또 양국은 투자문제에 관한 정부간 협의도 진행시킨다."

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한일각료회담(1998.11.28)에서는 한일투자협정의 조기체결, 한일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한일자유무역권 구상 실현 등을 위해 정책협조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1999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한일투자협정체결을 위한 예비협의를 진행했으며 1999년 9월 첫 본회의를 개최한 이래 2001년 3월말까지

모두 6차례의 본회의와 9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표 3 참조).

<표 3> 한일투자협정의 전개과정

1998.10.8	김대중 대통령 방일시 한일정상회담에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을 위한 행동계획」을 합의
1998.11.13	통상교섭본부장, APEC 계기 한일통상장관 회담시 한일투자협정 체결 협의
1998.11.28	한일각료회담시 양국 외무장관간 한일투자협정체결을 위한 예비협의 개시 합의
1999.2.23	제1차예비협의 개최
1999.3.20	오부치총리 방한시 한일정상회담에서 동협정 체결교섭가속화 합의
1999.4.20~21	제2차예비협의 개최
1999.9.30~10.1	제1차본회의 개최
1999.11.30~12.1	제2차실무회의 개최
1999.12.20	제2차실무회의 개최
2000.1.26~28	제2차본회의 개최, 제3차실무회의 개최
2000.4.25	제4차실무회의 개최
2000.8.2~4	제3차본회의 개최, 제5차실무회의 개최
2000.9.5~8	제4차본회의 개최
2000.11.1	제6차실무회의 개최
2000.11.27~28	제5차본회의 개최
2000.12.20~21	제7차실무회의 개최
2001.2.15	제8차실무회의 개최
2001.3.21~23	제6차본회의 개최, 제9차실무회의 개최

지금까지 진행된 한일투자협정 협상과정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일투자협정은 충분한 사전적 검토 없이 상황논리에 의해 졸속추진 되어 온 인상이 짙다. 그 동안 한국은 무역 및 투자 관련협상에서 다자주의의 원칙만을 고수하다가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이 전개되자 뒤늦게 다른 국가와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졸속추진 된다면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졸속추진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한일투자협정을 비롯한 작금의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진행을 보면 뒤늦은 대응을 졸속추진으로 만회하려 함으로써 상황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둘째, 노동자와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 채 투자협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투자협정은 향후의 자유무역협정과 더불어 노동자와 전국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와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한일투자협정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 정부가 앞장서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를 폭넓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 부쳐 그에 관한 내용을 조율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공개적 논의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노동계나 시민단체와의 진지한 협의 없이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논의가 밀실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한일투자협정은 노동자와 전국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와 내용에 대한 공감대 형

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한일투자협정 협상과 관련해 노동계나 시민단체와의 진지한 협의를 기피하고 일본정부와 밀실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간 협상에서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부는 한일투자협정 협상을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진행해 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협상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계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든 것을 함구한 채 협상을 진행해 왔다.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소위 '진지조항' 문제만 하더라도 그 관련내용이 일본신문에 보도되기 이전까지 정부는 노동계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협의를 한 적이 없다. 노동계나 시민단체를 배제한 정부의 밀실협상은 투자협정의 내용을 더욱 왜곡시키고 노동자나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2) 한일투자협정의 내용과 문제점

정부는 한일투자협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앞서 "한일투자협정은 OECD에서 협상 중인 다자간투자협정(MAI)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되어 사상 유례 없는 강력한 투자협정이 될 것이다"(한덕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1999년 1월23일자 日本經濟新聞 인터뷰)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것은 한일투자협정 협상이 MAI의 기본원칙과 내용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정리·소개하고 있는 한일투자협정의 주요내용

을 보면 그 대부분이 MAI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외국인투자의 원칙적 자유화 및 예외적 제한

- 투자와 관련 내·외국인을 동등대우(내국민대우)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감업종은 예외적으로 제한; 예외업종은 부속서에서 규정(네가티브 리스트)
- 투자가 성립되기 이전 단계(설립 전 단계)부터 내국민대우를 부여, 투자의 유치촉진.

○ 최혜국 대우

- 체약국의 투자자 또는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국이 외국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가장 나은 대우를 부여

○ 국유화 시 보상의무 부과

- 공공목적을 위해 정부가 투자자의 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시, 국제법 기준에 따는 보상의무 부과

○ 투자관련 송금의 보장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한 원금 및 이에 따른 과실의 국내외 송금보장; 단 일정조건 하에 단기자본이동과 관련된 송금제한 가능

○ 투자자에 대한 강제적 이행의무 부과금지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와 관련, 아래와 같은 강제적 이행의무 부과금지

* 외국인투자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토록 강제
* 일정물량 또는 금액의 수출 또는 외화획득과 연계하여 당해 투자에 의한 당해 체약국 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 기술, 생산공정 또는 자산적 가치가 있는 지식의 이전

○ 핵심적인 직원들의 입국과 체류보장

- 투자자와 고위경영자 및 전문기술자 등 핵심적인 직원들은 일시적으로 투자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해 상대체약국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

○ 투자관련분쟁해결절차의 강화

-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간 분쟁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법원을 거치지 않고 세계은행 산하의 ICSID 등 국제공인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한일투자협정의 이런 내용들은 앞서 MAI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데 지나치게 치중되어 투자유치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사회경제적 필요에 의한 정책수단을 제약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또한 투자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노동 및 환경분야에서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한일투자협정 논의 속에서는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노동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삽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른바 '진지(眞摯)조항'으로 표현되는 논의이다.

한일투자협정 교섭과정에서 일본측은 지속적으로 일본투자기업에서의 노사관계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정부가 강

구해 주도록 요구했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협정 속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측은 투자협정 속에 진지조항을 삽입하자고 요구했는데, 이 진지조항의 내용은 "일본기업에 노동쟁의가 있을 경우 기업이 요청하면 한국정부가 문제해결에 진지하게 응하고 중재기관은 합리적·객관적·공평한 태도로 중재에 임하며 이런 조치가 자국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내국민대우를 한다"는 것이다.

이 진지조항은 한국정부가 노동문제에 진지하고 공평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언뜻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바는 일본투자기업에서의 노사관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불온한 것이다.

진지조항이 단순히 정부의 진지하고 공평한 중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투자협정 속에 굳이 이런 규정을 두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노사간의 분쟁 시 중재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한국의 법제도나 중재시스템 속에 마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에 따라 공평하게 진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측이 어느 투자협정에서도 유례가 없는, 노동분쟁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대응을 촉구하는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 일본투자기업에서의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불순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본측은 왜 한일투자협정 협상에서 진지조항의 삽입과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일본측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일본 정부가 노동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두는 것은 한국에 투자하거나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기업가들이 무엇보다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관행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과거 한국에 진출했던 일본기업들이 1980년대 후반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한국 노동자들과 분쟁을 겪다가 철수한 기억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자신들이 철수한 것은 한국의 과격한 노동운동과 한국정부의 불충분한 지원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에 대한 왜곡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1980년대 후반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노동자들의 노조설립과 근로조건 개선요구가 거세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동안 노동자들이 억압적 노동정책과 노무관리 속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그 흐름은 지극히 자연스런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들은 노동자의 요구를 모두 과격한 것으로 치부하고 노동자들과 진지하게 대화하거나 교섭하려고 하지 않았다. 교섭이 파행적으로 진행되면서 노동쟁의가 발생하자 많은 일본기업들은 무책임하게 철수해 버렸다. 특히 적지 않은 기업들이 자본철수나 공장폐쇄를 결정하면서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심지어 노동자의 임금·퇴직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

일본기업들이 이런 전후 상황들을 무시한 채 계속 자신들의 피해와 한국 노동운동의 과격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억압적 통제 속에서 노동자들이 노조도 설립하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해야 했던 1980년대 전반까지의 상황이 결코 정상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노조가 설립되고 근로조건 개선요구가 제기되지 시작하자 그 상황을 용납하지 못하고 곧바로 철수해 버린 일본기업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일투자협정 협상진행 과정에서 진지조항 삽입의 문제는 진지조항에 대한 노동계의 거센 반발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진지조항 제의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현재 미해결쟁점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일본측이 어떤 형태로든

투자협정 속에 노동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6], 한국정부 내에서도 진지조항과 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협정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높은 관심을 고려한 다소의 성의표시는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다[7]는 점에서 노동권을 침해하는 부정적인 조항이 투자협정 속에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6) 진지조항 문제가 알려지면서 말썽이 되자 일본측은 진지조항과 같은 구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걸음 물러서면서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노동문제와 관련해) 어떤 식의 규정이던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해 여전히 노동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관심을 투자협정 속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2001년 6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일고위경제협의회에서 일본대표단은 "한국의 노동조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일본기업의 투자가 가능하며 양국간 투자협정도 신속히 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한국측에 공식전달 했다. 일본측은 1980년대 후반 한국에 진출했던 일본기업이 대거 철수한 사례를 들면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파업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무임금'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2001.6.14).

7) 한국정부는 노동문제에 대해 일본측이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본기업이 투자의욕을 잃지 않도록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배려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구체적으로 노사문제를 전담할 공무원을 일본기업공단지역에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일본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1999.10.25).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투자옴부즈맨 조직이 투자기업에서 노사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중간에 서서 공평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한일투자협정 협상 과정이나 내용을 보면, 노동문제가 완전히 전도된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자협정 속에서 노동문제는 외국인투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일투자협정 논의 속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데 치중된 투자협정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마저 침해하게 된다면 그런 투자협정을 도저히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노동운동은 투자협정이 자본과 투자자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시민의 사회적 권리도 존중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

4. 한일투자협정과 한일자유무역협정의 효과에 대한 전망

이 장에서는 한일 양국간에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 경제와 노동부문에 미칠 파장과 영향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로 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분석이 이루어져 왔으나 노동, 환경,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측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검토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먼저 한일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정부자료 및 선행연구 등을 활용해 살펴보고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이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경제적 효과

(1) 한일투자협정

정부가 한일투자협정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직접적 효과는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일본자본의 대한(對韓)투자를 확대·유치하는 것이다. 여기서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라는 것은 해외투자를 함에 있어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요

망하는 투자자에게 국가간 협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자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믿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본자본의 대한투자는 1998년까지 누계로 50억 2,400만 달러에 이르며 한국의 외국인 총투자 유입액의 23.4%를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연도별 투자액을 보면, 외국인투자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에 34.8%로 정점을 이룬 뒤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져 1997년 이후에는 7.6~8.0%에 머물고 있다(표 4 참조)[8]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추진하는 한국정부로서는 일본자본의 대한투자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표 4> 한·일간 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한국의 대일투자[1] (비중)	28 (2.3)	6 (0.5)	57 (2.5)	105 (3.4)	81 (1.9)	64 (2.0)	23 (0.6)	48 (1.9)
일본의 대한투자[2] (비중)	174 (21.6)	157 (22.2)	345 (34.8)	337 (24.8)	279 (12.1)	235 (7.6)	414 (8.0)	806 (7.8)

주 : 1) 투자기준 2) 도착기준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소·아시아경제연구소(2000 : 27)

8) 한편 전통적으로 미미했던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중 일본의 비중은 1995년 3.4%로 최고치를 기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0% 내외에 머물고 있다. 누계면에서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1951~1998)는 일본 총 해외직접투자의 1.0%, 한국의 대일직접투자(1962~1998)는 한국 총 해외직접투자의 1.8%에 그치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일투자협정은 다음과 같은 점들로 인해 외국인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유입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투자보호 및 효과적인 분쟁해결 장치를 통해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정책 및 규제의 변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투자의 기대수익성을 제고시킨다.
- 투자협정은 투자보호를 약속하는 한편 동시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는 수단이다. 따라서 투자협정 상대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대외신뢰도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 한일투자협정은 전통적인 투자보호 뿐 아니라 투자자유화 문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투자자유화 뿐 아니라 기존 투자관련조치의 후퇴를 방지함으로써 기존의 투자협정보다도 투자유입효과 및 신뢰도 제고효과가 더 크다.

그러면 실제로 한일투자협정이 체결될 경우 과연 어느 정도나 외국인의 투자유입이 증대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의 투자효과에 대한 자료들을 사용해 추정한 것에 따르면(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경제연구소 2000 : 45), 2000년 시점에서 일본과 투자협정의 내용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개방도, 투명성 등의 요소가 개선됨에 따라 1999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총액인 150억 달러의 17~23.6% 정도의 추가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25.5~35.3억 달러에 이른다.

투자협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증대하면 한국경제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용유발효과
- 신규·증액투자의 경우 직접적인 고용창출효과 유발
- 부실기업에 대한 M&A형태의 투자는 고용유지효과 발생
- 전후방연관산업에 대한 간접적 고용유발효과
- 산업연구원의 직접투자 1억불 당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973명으로 미국(529명)이나 영국(304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쟁 및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
- 사업부문 인수, 증자참여를 통한 국내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
- 국내시장 경쟁촉진 효과
- 국내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경제구조의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제고
-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는 잠재적 시장진입자의 암묵적 압력에 의해 국내독과점 형성방지

○ 무역수지효과
- 수입대체 및 다국적기업의 해외판로 개척효과
- 기술이전, 생산증대 등 외부경제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한 투자유치국의 수출경쟁력 증대효과

○ 기술이전효과

- 직·간접적인 기술도입효과 : 해외 모기업의 국내자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공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 및 시설재에 체화된 기술간접도입효과
- 전후방연관산업 및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파급효과
- R&D투자, 직업훈련을 통한 인적자본형성 및 기술인력양성효과

○ 첨단경영기법 이전효과
-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선진경영기법, 마케팅, 서비스 등을 모방하여 경영효율을 제고하도록 하는 전시효과
- 선진기법을 활용한 결제단계 축소, 재무구조 개선, 경영투명성 제고, 정보화 투자 등 경영프로세스의 효율화 도모

○ 세수증대효과
- 외국인기업의 법인세, 고용되어 있는 인력에 대한 소득세 증대효과
- 창출한 이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수증대효과

그러나 일본자본의 한국투자가 위와 같은 긍정적 효과만을 야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 역시 만만치 않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본투자기업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기업을 구축하며 한국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다. 자본과 기술면에서 우위에 있는 일본기업들이 한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기업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밀려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한국경제의 자립기반은 약화되고 지금도 심각한 대일종속성이 더욱 강화될 위험성이 크다.

둘째, 투자자유화가 확대됨으로 인해 국가기간중추산업이나 사회적 공공성이 큰 부문마저 일본자본에 의해 장악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예외업종의 대상과 범위설정이 문제가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투자협정은 모든 분야에 걸쳐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이나 국가중추산업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부문들이 외국자본에 의해 장악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사회적 공공성과 국가경제기반이 파괴될 수 있다.[9)]

셋째, 정부는 일본기업의 투자를 통해 무역수지의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역수지가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즉 일본투자기업이 일본으로부터 중간재, 설비, 부품 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증대효과가 나타나며 그로 인해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일본자본이 단순히 한국 국내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할 경우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투자협정은 투자자에 대해 기술이전, 현지생산품 사용의무, 수출의무, 현지인고용의무 등 어떤 형태의 강제적 이행의무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고용유발, 기술이전 등의 제반 투자효과가 충분히 나타나

---

9)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지분한도 철폐가 투자협정 협상과 모종의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간적으로 한일·한미투자협정 진행과정과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일치할 뿐 아니라 정부가 민영화의 범위, 시기, 외국인소유지분한도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면서 미국이나 일본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전혀 근거 없다고 할 수 있다.

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일련의 사항조차 모두 강제적 이행의무 부과금지에 위배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국이 외국인투자를 국가발전과 정책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2) 한일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거나 현저히 낮추어 교역을 자유화하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와 같이 종종 투자협정에서 다루는 내용(투자보호 및 투자자유화)도 포괄하기 때문에 투자협정에 비해 더욱 광범위하고 진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협정에 비해 자유무역협정의 국민경제에 대한 파장과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한일 양국간에는 지금 투자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양국 모두 투자협정 이후에는 다시 그것을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는 작업 역시 필요한 일이다.

국내에서 한일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경제연구소 2000)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권영민·박승록 외 2001)에서 수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두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일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서는 한일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정태적 차원과 동태적 차원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정태적 차원에는 관세철폐 효과, 비관세장벽완화 효과,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효과가 있다.

먼저 관세철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관세철폐에 따른 산업별 생산효과를 보면, 한국은 농축산업, 임업, 수산업의 제1차산업과 식료품, 섬유, 의복, 가죽제품의 경공업제품과 자동차산업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광산물, 음료 및 담배, 목재·펄프, 종이·인쇄, 화학제품, 철강, 금속제품, 수송장비, 전기·전자, 기계, 기타 제조업에서는 생산이 감소된다.
- 관세철폐에 따라 한국은 농축산물, 수산물 등의 제1차산업과 식료품, 의복, 가죽제품의 경공업 분야에 있어 무역흑자가 발생하고 중화학산업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산업에서는 무역적자가 발생한다.
- 한국의 실질GDP와 후생수준을 각각 0.07% 및 0.19%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3.4억 달러 및 7.7억 달러에 이른다.
- 대일본 무역수지의 경우 60.9억 달러의 추가적인 무역적자가 발생하나 제3국과의 무역수지 변동을 포함하면 대세계무역수지는 15.3억 달러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역수지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양국간의 교역규모의 확대로 비탄력적인 대일수입구조를 가진 한국의 대일수입이 증가하는 한편 수입선이 제3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이전되는 무역전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관세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로 얻을 수 있는 한국의 경제적 효과는 통관절차에서의 4.6억 달러의 비용절감과 표준·인증에서의 6.1억 달러의 수출증대효과를 합해 모두 10.7억 달러의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시장에서의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 한일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시장을 기존의 WTO 양허수준을 넘어 더욱 확대개방하는, 즉 WTO Plus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건설서비스에서 약 9.2억 달러의 무역흑자가 예상된다.
- 유통서비스 분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일본에서의 유통망의 확대, 일본의 선진마케팅 기법 습득, 한국상품의 인지도 제고 및 그에 따른 수출촉진 등이 기대된다.
- 금융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등 투자상의 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양국간 자본이동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며 특히 국내외 금리차이 등 금융자산의 수익률 차이를 감안할 때 포트폴리오 형태의 자본이동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 통신부문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본측의 투자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관광부문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토대로 비자면제, 출입국절차의 간소화, 항공노선의 증설 등이 이루어지면 일본인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무역협정의 동태적 효과에는 규모의 경제효과, 경쟁의 심화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 국가간 생산요소의 통합적 활용으로 인한 효과 등이 있다. 한국 중화학산업의 생산성이 매년 1%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동태적 효과를 분석하면 정태적 분석결과와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의류와 피혁가공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는 반면 수송기계,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류 등 한

국의 수출주력산업의 생산규모가 5~13%의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다. 무역수지 효과를 보면, 대일무역적자는 4.4억 달러의 추가적 적자가 예상되나 대세계무역수지는 30.1억 달러의 흑자가 기대된다.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를 종합해 산업별 효과를 측정해 보면,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이후 주력산업의 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경공업 및 1차산업의 생산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표 5 참조). 무역수지 효과를 보면, 대일무역수지에서는 65.3억 달러의 적자가 생기지만 대세계무역수지에서는 14.8억 달러의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자유무역협정하에서 양국간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고 한국의 주력수출산업의 생산성이 개선되는 경우 한일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은 연 2.81%의 실질 GDP증가와 연간 455억 달러의 후생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표 6 참조).

<표 5> 한일자유협정의 산업별 생산에 대한 영향

	정태적 효과	동태적 효과	전체 효과
농 업	0.15	-0.21	-0.06
가공식품	1.05	0.19	1.24
임 업	0.02	0.15	0.17
수 산 업	0.24	-0.01	0.23
광물자원	-0.30	-0.34	-0.64
비철금속	-0.93	0.67	-0.26
음료·담배	-2.38	0.91	-1.47
섬 유	0.69	-3.26	-2.57
의 류	8.75	-4.16	4.59
피혁제품	9.56	-7.20	2.36
목재·펄프	-0.30	0.71	0.41
종이·인쇄	-0.49	0.13	-0.36
화 공	-0.79	2.68	1.89
철 강	-1.80	6.91	5.11
금속제품	-1.14	4.99	3.85
자 동 차	0.68	6.63	7.31
기타수송장비	-1.31	14.67	13.36
전기·전자	-0.65	6.90	6.25
기계장비	-1.65	8.23	6.58
기타제조업	-1.86	-3.98	-5.84

주 : 수량기준임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경제연구소(2000 : 48)

<표 6>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실질GDP와 후생수준에 대한 영향

구 분	정태적 효과	동태적 효과	전체 효과
후생수준(%)	-0.09	11.43	11.24
등가변환(억달러)	-7.66	462.65	454.99
실질GDP(%)	-0.07	2.88	2.81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경제연구소(2000 : 50)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일간 관세장벽의 철폐(2000년 1월 기준으로)는 교역증대와 민간부문의 투자증가를 통해 한국경제의 총생산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GDP 증대율은 평균 0.2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의 증가폭이 수입증가폭을 상회하여 한일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한국의 무역수지 개선은 10년간 8.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의 설비투자는 처음 5년간 0.49%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이후에는 0.24%로 저하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7 참조).

<표 7> 한일자유무역협정의 거시경제효과

	2001	2002	2001~2005	2006~2010	2001~2010
GDP 증가(%)	0.27	0.33	0.30	0.18	0.23
민간투자증가(%)	0.44	0.41	0.49	0.09	0.24
고용증가	0.10	0.10	0.07	0.04	0.06
수출증가(%)	1.10	1.09	0.93	0.67	0.78
수입증가(%)	0.47	0.46	0.43	0.28	0.37
무역수지개선(억달러)	1.0	1.1	4.5	4.4	8.9
수출단가	0.75	0.80	0.68	0.24	0.42
수입단가	-0.67	-0.71	-0.71	-1.18	-1.00

자료 : 권영민, 박승록 외(2001 : 176)

한일자유무역협정이 대일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2005년까지는 추가적인 누적적자가 2.9억 달러이지만 이후 그 적자폭이 더 늘어나 2010년까지는 19.5억 달러의 누적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로 무역수지효과를 보면, 섬유, 의복, 목재가구, 가죽제품 등에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기초화학, 철강, 전자기기,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는 대일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한일자유무역협정은 대개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정태적 조건하에서 한일자유무역협정은 한국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 양국의 산업구조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한일자유무역협정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 한일자유무역협정은 대일무역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 더 큰 흑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세계무역수지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 동태적 차원에서 보면 한일자유무역협정은 한국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GDP성장, 대세계무역수지, 후생수준 등에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규모의 경제효과, 경쟁심화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 국가간 생산요소의 통합적 활용으로 인한 효과와 같은 동태적 효과는 파생적 기대효과라는 점이며 중화학공업에서의 생산성 1% 증가라는 가정과 같이 특정한 기대효과를 전제한 상태에서 계산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동태적 효과는 현상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의 정태적 효과에 비해 불확실성의 정도가 더 크다.

2)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한 영향

한일 양국간에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노동부문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여기서는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한 한일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에 대해 생각해보자.

먼저 노동시장에 대한 효과를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본다면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은 정(正)과 부(負)의 고용효과를 동시에 가지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고용유발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 고용효과로는 일본자본의 투자로 인해 생기는 직접적인 고용창출효과와 경제성장의 증대로 인한 광범위한 고용유발효과가 있다. 반면 부의 고용효과도 생기게 되는데 경쟁력의 우위에 선 일본기업들이 동종의 한국기업들을 압도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한국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고용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투자협정에서 현지인고용의무비율과 같은 것을 강제적 이행의무 부과로서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고용유발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본자본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면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고용유발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일자유무역협정 거시경제효과 예측에 따르면, 한일자유무역협정은 향후 10년간 0.06% 정도의 고용증가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총량적으로는 정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산업부문별로는 고용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부문에 따라서는 부의 고용효과가 두드러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부의 고용효과가 나타나는 산업에서는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 한일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이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정의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노동조건과 같은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는 의문이다. 투자협정과 관련된 교섭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노동자들도 일본 노동자들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하였다지만 실상 이런 낭만적 기대를 갖는 것은 무리일 듯 싶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자본이

투자를 위한 환경조성의 요구나 기업이전의 위협 등을 통해 정부나 노동자를 압박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낮추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은 한일 양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상향경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향경쟁(race to the bottom)'시킬 가능성이 크다. 상향경쟁이 아니라 하향경쟁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 노동자들이 일본 노동자들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거꾸로 저하될 것이다.

실제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된 이후 관련국가들에서 임금불평등이 커지고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경제연구소의 윌리엄 클라인은 "미국에서의 임금 불평등성 악화에 대해 NAFTA는 최소한 38%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멕시코인들의 수입은 NA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997년 7,771,607명의 멕시코인들이 법정 최저임금인 하루 3.40달러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은 1993년보다 20% 증가한 것이다. 또한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멕시코 제조업분야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미국 노동자의 9.6%에 불과한데, 이는 1980년과 비교할 때 22%나 하락한 것이다(이창근 2000b).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한일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이 정부의 장미빛 약속처럼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상향조정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한일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한일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이 노동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한일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한일투자협정 협상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항의 문제 때문이다. 현재 한일투자협정 협상과정에서는 노동권을 존중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노동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노동조항의 삽입이 논의되고 있다.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제적으로 확립된 노동기준과 현지의 노동 법제도 및 관행에 대한 존중을 약속하고 이를 감시하고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노동조항이 사회적 조항으로서 명시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일투자협정 협상과정에서는 사회적 조항으로서의 노동조항의 삽입이 논의되기는커녕 한국정부의 개입을 통해 일본투자기업에서의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진지조항이든 아니던 일본측은 투자협정 속에 노동조합을 견제하고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조항의 삽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측도 진지조항과 같은 형식은 아니더라도 일본측의 노사관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일정한 성의표시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든 진지조항과 같은 종류의 독소조항이 투자협정 속에 삽입되게 된다면 향후 노동조합 활동 및 노사관계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둘째는 한일투자협정 논의과정에서 일본 자본이나 정부가 보이고 있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일본 자본이나 정부는 한일투자협정 논의과정에서 한국의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보이며 이 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일본 자본투자의 활성화나 한일투자협정의 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해 왔다. 외국투자가들이 투자대상국의 노사관계에 어느 정도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새삼스런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본 자본이나 정부가 한국의 노동운동이나 노사관계에

보이는 태도는 특히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투자기업들의 모임으로 일본정부의 투자협정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Seoul Japan Club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애로요인 및 개선요망』(2000.10)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직접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과 개선요망사항을 적시했는데, 거기서는 노동 및 노사관계 관련사안을 제일 첫머리에 지적하고 있다. 노사협정 및 관행, 유급휴가, 퇴직금, 전임자, 모성보호, 파트타임, 파견노동자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지적되고 있는 그 보고서에서는 심지어 "과도하게 노동자에게 유리한 노사협정 및 관행을 시정하고 격렬한 노동쟁의가 횡행하지 않도록 정부와 각종기관이 지도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기는 투자가들뿐 아니라 일본정부도 마찬가지다. 2001년 6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일고위경제협의회에서 일본대표단은 "한국의 노동조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일본기업의 투자가 가능하며 양국간 투자협정도 신속히 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한국측에 공식전달 했다. 일본측은 1980년대 후반 한국에 진출했던 일본기업이 대거 철수한 사례를 들면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파업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무임금'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2001.6.14).

이러한 일본 정부와 자본의 인식과 태도가 전환되지 않는 한 한일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5.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대응방안

지금까지 한일투자협정의 맥락, 협상 진행과정 및 내용, 경제 및 노동부문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일투자협정에 대해 노동운동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인식 및 대응과 관련해 기존의 입장들을 정리·평가해 보고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노동운동의 '비판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비판적 개입'의 일환으로서 투자협정 속에 사회적 조항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기존의 입장 평가와 '비판적 개입'의 필요성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입장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가에 따라 극단적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먼저 정부나 경영계는 한일투자협정을 세계화·개방화·지역주의의 흐름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일투자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의 확대, 경제구조의 개방화와 선진화,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도입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역역조의 심화, 유사한 산업구조와 취약한 경쟁력으로 인한 산업 및 기업의 약체화 가능성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한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일투자협정의 동태적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로 보고 있다. 나아가 정부와 경영계는 한일투자협정을 본격적인 지역자유무역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前)단계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반해 한일투자협정을 반대하는 사회운동 진영은 한일투자협정이 초국적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며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파괴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한국경제의 자주적 발전의 저해와 대일구조적 종속의 심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진지조항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일본자본은 한일투자협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한일투자협정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일투자협정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정부와 사회운동 진영의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견해의 문제점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한일투자협정에 찬성하는 정부와 경영계는 세계화와 지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의 이점과 필요성만을 강조할 뿐 그 세계화와 지역주의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한일투자협정은 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맥락 속에서 진행되면서 자본의 이해를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와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는 소홀히 하고 있다.

한일투자협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항은 노동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권을 침해하고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한일투자협정이 자본의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면 과연 이 협정이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체결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

에 없다.

투자협정의 성격상 투자자의 권리와 이해를 존중한다는 사실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권리는 합리적인 선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투자자의 권리와 함께 투자협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노동자와 시민의 사회적 권리도 똑같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무시한 채 투자자 이해 일변도로 한일투자협정의 내용이 구성된다면 그것이 설령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진행 속에서 한국경제에 필요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노동운동이 한일투자협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전면적 반대의 입장을 검토하도록 하자. 한일투자협정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이들의 논의 중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나 한일투자협정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등은 여러 면에서 공감할 만하다. 분명 현재의 세계화는 자본의 이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일투자협정의 많은 부분이 투자자본의 이해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한일투자협정의 문제점에 대한 이들의 비판에 공감하는 부분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전면적 반대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며 불모적(不毛的)이라는 생각이다. 왜 그런가?

우선 현실을 냉철히 조명할 때,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향후에도 개방경제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경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속에서의 지역주의의 강화라는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요교역국가들과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적응전략이 될 수 있음을 부

정할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한국경제의 현실에서 그 흐름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거나 역류하는 것이 가능하며 의미가 있을 지 의문이다. 세계화의 잘못된 흐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 흐름을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이 한국경제의 솔직한 현주소가 아닌가?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한국경제의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할 때 노동운동 역시 작금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의 한국경제의 위상과 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전면적 반대론은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전면적 반대라는 근본주의적 주장에만 함몰된 나머지 투자협정의 개선을 위한 '비판적 개입'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현재 진행중인 세계화와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의 논의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서운 비판, 나아가 근본주의적 비판을 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근본주의적 주장에만 함몰된 나머지 현실에서 투자협정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무시한다는 점이다.

세계화나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근본주의적 비판과 비판적 개입 간에는 분명 논리적으로는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며 모순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복합적이고 모순된 현실 속에 존재하며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운동적 관점에서는 근본주의적 비판과 함께 비판적 개입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문제가 있다고 언제나 밖에서 소리만 지르는 것은 책임 있는 운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근본주의적 비판의 칼날을 겨누는 동시에 비판적 개입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전면적 반대론의 순수성과 문제의식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본주의에 계속 함몰되어 있는 한 그 논의는 자칫 운동을

불모화 시킬 수 있다.

한일투자협정과 관련해 노동운동은 그것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면서도 또한 한일투자협정에 비판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경제의 위상과 상황,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의 영향력, 세계경제의 흐름,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 노동운동은 지금 비판적 개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사회적 조항을 통한 비판적 개입

노동운동은 한일투자협정에 어떻게 비판적으로 개입할 것인가?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온전한 의미에서의 비판적 개입은 투자협정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작업을 수반하는 것이겠지만, 투자협정의 성격이나 노동운동의 현실적 역량 등을 고려할 때 투자협정 내용 전반에 대해 노동운동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운동이 투자협정에 대한 비판적 개입을 추구함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할 사안은 노동·환경·인권문제 등과 관련된 사회적 조항(social clause)을 포함시키는 문제다.

사회적 조항의 포함과 관련해 근본주의자들은 매우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WTO 혹은 자유무역협정(및 투자협정)에 편입된 사회적 조항은 노동 및 환경권 보호에 아무런 역할도 못했을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선 투쟁을 왜곡하고

보호주의적 흐름과 결탁할 가능성이 높았다"(이창근 2001 : 553~4)는 것이다. 이 비판은 부분적으로 경청할 만한 점이 있긴 하지만 사회적 조항의 의미와 효과를 지나치게 폄하하고 그것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만을 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사회적 조항이 무역 및 투자에서 노동·환경·인권과 같은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는 완벽한 장치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활용된다면 나름대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비판적 개입을 통해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할 때 사회적 조항은 사전적으로 배제되거나 일축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보다 체계적으로 가다듬어지면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사안이다. 기존협정 속에서의 사회적 조항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구조적 결함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사회적 조항을 정비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노동부속협정인 NAALC(North American Agreement on Labor Cooperation)의 내용과 운용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NAALC를 실효성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인권감시그룹(Human Rights Watch)'의 NAALC 연구(2001)는 매우 시사적이다.[10] 사회적 조항의 한계만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그것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지만---그것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한일투자협정 속에는 노동문제와 관련해 어떤 내용들

---

10) 부록에 이 연구의 일부 내용을 번역·수록하였다. 참고로 이 연구는 전문이 번역되어 노총연구원 신서로 출간될 예정이다.

이 사회적 조항으로서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

우선 지적할 점은 현재 한일투자협정 협상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지조항류의 노동조항은 노동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조항이 아닌 오히려 노동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므로 결코 협정 속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데 치중된 투자협정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마저 침해하게 된다면 노동계로서는 그런 투자협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투자협정에서 노동조항은 노동권의 보호라는 사회적 조항의 관점에서 다시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투자협정이 한일 양국의 노동권과 노동기준을 침해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 노동권 및 노동기준을 침해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는 일임을 명기하고 투자와 관련된 사안들이 노동권 및 노동기준의 존중과 결합되는 방향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ILO 조약·권고 등에서 확인된 바 있는 국제적 노동기준이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핵심적 노동기준으로 분류되는 ILO의 8개 협약, 즉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강제노동협약(제29호), 강제노동철폐협약(제105호), 최저취업연령협약(제138호), 최악형태의 아동노동금지 및 철폐에 관한 협약(제182호), 남녀노동자에 대한 동일가치 노동·동일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처우에 관한 협약(제111호)에 대해서는 거기서 규정된 노동기준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1)]

---

11) 한국의 경우에는 핵심적 노동기준으로 분류되는 ILO 8개 협약 중 4개 협약(제100호 제111호, 제138호, 제182호)만을 비준하

넷째, 투자기업들이 한일 양국의 노동관련 법제도 및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 투자협정 속에 명기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의 법제도 및 관행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외국인투자라는 이유로 치외법권적인 요구와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로 인해 외국인투자기업에서의 노동권 및 노사관계가 왜곡되고 파행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지의 노동관련 법제도 및 관행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기존 협정 속에 들어있던 사회적 조항이 올바로 기능하지 못했던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위반사례를 처리·해결할 수 있는 분쟁처리기구가 제대로 설립·작동하지 않았던 바가 크다. '인권감시그룹(Human Rights Watch)'의 연구에서도 NAALC의 가장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으로 독립적인 감시기구(independent oversight body)의 결여를 지적하고 있다.[12] 노동권과 관련된 사회적 조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그것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심사·처리·처벌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물론 그 기구에는 한일 양국의 노·사·정이 참가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들이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조항으로서 한일투자협정 속에 포함되게 될 때 한일투자협정은 노동자와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채 투자자의 일방적 이해만을 보장하는 권리헌장에 불과하다는 오명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른다.

고 있다.

12) 협정초안단계에서는 그 기구의 설립안이 들어있었으나 나중에 약체화된 양국간, 3국간 협의기구로 대체되었다.

<참고문헌>

권영민, 박승록 외(2001),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기업간 협력방안』, 한국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경제연구소(2000),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구상 : 평가와 전망』, 한일공동심포지움.

박번순·전영재(2001), 『세계화와 지역화』, 삼성경제연구소.

외교통상부(2000), 「주요통상현안」.

이해영(200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한·미투자협정」, 21세기 국가경영연구회,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과 한국경제에 관한 토론자료집』.

최혁(2001),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1세기 국가경영연구회,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과 한국경제에 관한 토론자료집』.

이종회(2001), 「한·미/한·일 투자협정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21세기 국가경영연구회,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과 한국경제에 관한 토론자료집』.

이창근(2000a), 「금융세계화, 한미·한일투자협정 그리고 우리의 대응」, 『진보평론』 여름호.

이창근(2000b), 「우리는 '자유'무역을 원하지 않는다 : 김대중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배경과 영향」.

이창근(200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국제기구·협정비판과 민중운동의 대응전략」 이병천·조원희 편, 『한국경제 재생의 길은 있는가』, 당대.

OECD(1996), 허재준, 배용호, 김준 역, 『무역, 고용, 노동기준 : 핵심노동기준과 국제무역』, 한국노동연구원.

이한영, 최계영, 류정우(2000), 『한·미/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WTO뉴라운드 협상 등 최근 진행 중인 정보통신관련 무역·투자협정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성봉 외(1999), 『동북아경제협력 : 투자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창재 외(1999), 『동북아경제협력 전략연구<총괄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외(1999), 『동북아경제협력 :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왕윤종(1996),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허재준(2001),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속에 나타난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세미나 발표문.

Seoul Japan Club(2000), 「外國人直接投資等の隘路要因及び改善要望」.

連合(2001), 「日韓投資協定の現狀と今後の課題」.

連合(2001), 「外務省宛日韓投資協定に關する要請書」.

經濟團體連合會(2000), 「自由貿易協定の積極的な推進を望む」.

Human Rights Watch(2001), *Trading Away Rights : The Unfulfilled Promise of NAFTA's Labor Side Agreement*, http://www.hrw.org/reports/2001/nafta.

【부록 1】

NAFTA 노동부속협정(NAALC)의 문제점[13]

<NAALC의 목표와 의무사항> [14]

1조

이 협정의 목적은 협정 가맹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삶의 질과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가능한 최대한도로 노동협정의 원칙을 권장하고, 각 가맹 당사국의 노동법과 노동관련 제도들에 대한 호혜적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교류 및 공표를 권장하며, 각 가맹 당사국 노동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촉진하고, 그리고 노동법상 행정체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부분 인용).

2조

가맹 당사국의 헌법에 대한 존중을 확약하면서, 아울러 각국 정부

---

13) 본 자료는 Human Rights Watch(2001)의 Trading Away Rights : The Unfulfilled Promise of NAFTA's Labor Side Agreement (http://www.hrw.org/reports/2001/nafta) 의 일부내용을 번역수록한 것이다. 참고로 이 자료는 나중에 전문번역되어 노총중앙연구원 신서로 출간될 예정이다.

14)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노동부속협정의 정식명칭은 '노동협력에 관한 북미협정(North America Agreement on Labor Cooperation : NAALC)'이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때에 따라 '노동협정'으로 줄여 번역하였다.

가 자신들의 독자적인 노동규준을 확립하고 이 규준을 자국의 노동법 및 관련 규율에 따라 채택,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가맹 당사국은 이러한 노동법과 관련규율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노동조건과 생산성을 산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규준을 확립해야 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노동규준을 개선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3조

(1) (a - g) : 각 가맹 당사국은 조약 42조(특정 가맹 당사국의 노동법을 다른 가맹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금함)에 근거하여 적절한 정부당국의 조치를 통한 노동법의 효율적 실행과 노동협정 의무조항의 이행을 촉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독관의 지명과 교육, 노동협정 의무조항의 이행 감시 및 현장감시를 포함한 의무조항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자발적 이행 보장을 위한 노력, 기록 유지와 보고서 제출 요구, 사업장 차원에서의 노사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위원회 설립 촉진, 조정, 화해, 중재 역할 제공 및 촉진,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구제책, 또는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 등이 그 예이다.

4조

(1) : 각 협약 가맹 당사국은 자국 법률 체계 하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자연인에 대해 자국 노동법의 시행을 위한 제반 행정기구, 준사법기구, 사법기구, 또는 노동법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5조

(1) (a와 d), 그리고 5조 (4) : 각 가맹 당사국은 노동법 적용 및 실행을 위한 행정기구, 준사법기관, 사법기관, 노동법원의 관련 절차가 공정, 공평, 투명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각 가맹 당사국은 위 절차가 법에 정한 정당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불필요하게 복잡하지 않고 불합리한 관련 비용을 부과하거나, 처리 절차에 시한을 설정, 또는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각 가맹 당사국은 위 사항을 집행하거나 검토하는 법정이 불편부당하고 독립적이며, 결과와 관련한 실질적인 이해를 지니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6조

가맹 당사국은 이 협정에 의해 포괄되는 제반 사안에 적용하기 위한 제 법령과 규제, 행정절차 및 행정명령을 즉시 공표 하거나 이용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7조

협정 당사국은 자국의 노동법령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동협정 노동기본권의 원칙[15] >

노동협정은 11가지 노동기본권을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각 단계마다 가맹국이 11가지 노동기본권을 자국 노동법으로 시행하는 것과 관련한 추가적인 활동들을 부과하고 있다. 3단계 모두에 걸쳐서 가맹국은 정부간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논의되는 미이행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합의를 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프로그램이 문제해결에 미흡하거나 또는 문제점으로 논의되는 노동기본권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가맹국은 분쟁해결을 위해 비구속적 권고사항을 작성하게 될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전문가 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첫 번째 단계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문제로서 전문가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의거해 해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제재조치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 첫번째 단계
(전문가 평가위원회 및 중재위원회 구성과 제재조치까지 가능)
유·소년 노동에 대한 보호
최저임금을 포함한 최저 고용기준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

○ 두번째 단계
(전문가 평가 위원회에 상정 가능)
강제노동의 금지

---

15) NAALC, Annex Ⅰ

산업재해 및 직업병 관련 보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
고용차별 철폐
남녀 동일임금 지급

○ 세번째 단계
(가장 낮은 단계) (어떠한 독립적인 시정 조치 부재)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Ⅰ. 요약

1993년,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3국은 자국의 노동기본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NAFTA 협약에 따라 노동부속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NAFTA가 발효된 지 7년이 지난 현재까지의 상황은 3국이 당시의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했음을 기록은 보여주고 있다. '노동협력에 관한 북미협정'으로 알려진 이 협약은 시작 당시부터 미비점으로 인해 점차 사문화 되어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맹국의 제한적인 협약 조항 행사가 보여주는 바에 비해서는 노동기본권과 노동규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더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NAFTA 가맹국은 이러한 가능성을 이용하기보다는 협약의 무기력성과 무력함을 노동자 권익 보호에 이용해 왔던 것이다.

노동기본권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우리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는 적극적으로 노동협정 조항이 정하고 있는 제반의 기제와 절차를 이용, 시험해 왔었고 지난 수년간 명백한 노동협정 조항 위반으로 2건의 진정을 제출했었다. 노동기본권과 무역 연계에 대한 방법론 또는 그 시행 여부를 놓고서 국제적인 논쟁이 점증하는 가운데, 노동협정의 경험과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 보고서는 이런 측면에서 NAFTA의 노동협정을 평가하고 비정치적 관점에서 더 생산적인 논쟁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작성하였다. 인권감시는 무역 그 자체, 그리고 NAFTA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견지하고 있지 않지만, 노동기본권을 제고하기 위한 가능한 최고의 효율적인 수단을 파악, 발전시키며 나아가 이를 이행하는데 전념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인권 감시는 현재의 노동협정 조항과 그 실제적인 운영을

비판함과 아울러 NAFTA 가맹 3개국이 현재의 노동협정 조항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또한 노동기본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 어떻게 협약이 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사항을 포함시켰다.

노동협정은 노동관련 의무조항을 두고서, 몇몇 사안의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서, 실제적인 그 결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행된 노동기본권 - 무역 연계 중에서는 가장 야심 찬 것이다. 이 협약하에서 가맹국은 노동관련 법과 규제조항에 진전된 노동규범을 명문화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규범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맹국은 법 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평등하며,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협정은 11가지 노동기본권 핵심분야의 이행을 위해 자국의 노동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몇몇 분야의 경우에는 '관행적인 미이행 유형'을 노동협정상에 명시하여 외부 전문가들의 임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미이행 유형이 지속될 경우, 중재위원회를 구성,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처음에 구상, 논의될 당시, NAFTA는 협약 내에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관련 조항을 두지 않았고 지금처럼 보완협정을 통해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92년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빌 클린턴은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NAFTA가 "현재 빈번히 위반하고 있는 멕시코 노동법상의 제반 기준 준수를 요구할 우리 미국의 권리 보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명시되지 않았다"며 NAFTA 협정을 비판했었다. 클린턴은 미국 기업이 이러한 멕시코의 느슨한 노동법 집행상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멕시코로 생산기지 이전을 시도할지 모른다는 민주당의 핵심 선거구 유권자와 노동조합의 우려

를 완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

캐나다, 멕시코, 미국 3국간에 최종적으로 협의된 노동협정은 3국의 노동규준 일치를 위한 권고사항과 사법 처리 및 소송절차 진행을 위한 국제적 성격의 사법기구 설치를 제외시킴으로써 핵심적인 쟁점을 우회한 것이었다. 오히려 노동협정은 조약 당사국의 노동기본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을 권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었고, 노동협정 위반사항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당사국간의 정치적 회합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비정부기구와 개인들도 노동협정상의 의무사항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관련국 정부에 이와 관련한 사실을 제기하는 등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동협정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국제적 규범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대신 ILO와의 협력아래 각 조약 당사국이 자국의 노동규준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노동협정의 노동관련 원칙이 이민노동자에 대한 보호, 산재 및 직업병 노동자에 대한 보상 등 ILO의 핵심 노동규준 보다도 더 광범위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협정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어느 특정 사안에 대한 문제해결이 목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어느 노동자가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하여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이 사안을 노동협정에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결사의 자유 보호와 관련하여, 이러한 법 시행상의 문제점 해결은 노동협정상 해당사항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재판의 판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멕시코 노동자가 노동협정상의 절차를 통해 법적 미비를 보완, 구제될 수는 없지만, 노동협정을 통해 이러한 멕시코 노동법상의 문제점 개선을 요청할 수는 있다.

이러한 노동협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동협정은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 현재 보다 훨씬 더 효율적,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가맹 당사국이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노동협정을 자국의 노동기본권 보호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가맹 당사국은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 자국의 노동관련 법 집행 및 정책개발에 노동협정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노동기본권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적 논쟁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구조적 취약성

노동협정의 중요한 약점중의 하나는 바로 독립적인 감시, 감독기구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노동협정 논의 초기에는 그러한 기구가 제안되었고 논의되었지만, 결국 가맹국은 노동협정상의 원칙을 실시하기에는 취약한 쌍무간, 내지는 3국간 협의라는 제도를 만들었을 뿐이다. 따라서, 미국이 노동협정상의 의무조항을 위반하더라도 멕시코, 또는 캐나다는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이러한 의무사항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압력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미 시작 초기부터 예견된 일이었지만, 멕시코 또는 캐나다는 이러한 압력을 행사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미국과 쌍무 관계상의 다른 문제점들 - 예를 들어 이민 노동자 문제, 마약 문제, 무역 문제 등 - 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기본권 보장과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협정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노동협정 가맹국들은 보완협정상의 의무조항 미이행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보완협정상의 취약점을 이용해 왔었다. 노동협정상의 미이행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각 가맹국 내에 설

치된 국가사무국은 어떠한 진정들을 접수할 것인지의 여부와 함께 향후 조사진행 및 보고서 작성에 전적인 재량권을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왔다. 유사하게 노동협정은 가맹국 노동부 장관이 노동협정 의무조항의 미이행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가맹국 정부들은 때때로 진정인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를 외면해 왔으며, 이에 대해 보고서를 발행하더라도 정부간 협의에서는 핵심 문제들을 제외시키거나, 포함시키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노동협정은 '전문가 평가위원회'로 알려진 외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협정상의 몇몇 특정 원칙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문제해결을 위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노동기본권 원칙이 무시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노동협정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다른 노동협정상의 의무조항, 즉, 더 진전된 노동규준의 유지와 개선, 그리고 공정한 노동중재 기구 등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는 앞서 언급한 '전문가 평가 위원회'에 제기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사항 이행은 자국의 노동법을 실질적으로 적용, 시행하려는 정부 당국의 의사와 능력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협정의 심각한 한계라 아니 할 수 없다. 부가하여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3가지 기본적인 권리 - 즉,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 - 에 관한 미이행 사항은 전문가 위원회나 중재위원회를 통한 제재로 이어질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노동협정 조항의 소극적 활용

현재까지 노동협정은 비정부기구가 노동협정 의무사항의 위반, 또는 미이행 이라고 주장해 왔던 23건의 진정 사안을 처리해 왔다. 이 보고서의 4장에서는 협약의 활용과 관련한 구조적 취약점에 대해 상세한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5장에서는 노동협정 하에서 제기된 사건들을 요약 검토하고, 6장에서는 각 진정사안을 노동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사항들에 기초하여 분석, 각 진정사안이 남긴 영향과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나아가 가맹 당사국들이 노동협정상의 조항을 어떻게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국가사무국 및 노동협정 가맹국
노동부 처리 절차의 핵심 과정

1) 진정 사안 심리 개시
▼
2) 관련 정보 수집
▼
3) 보고서 작성
▼
4) 조사결과 공표.
▼
5) 권고사항 작성
▼
6) 장관급 협의
▼
7) 장관급 협정
▼
8) 후속조치

자료 : Human Rights Watch

각국의 국가사무국과 노동관련 부서는 노동협정을 준거로 삼아 노동기본권을 감시할 8차례의 기회를 갖게 된다. 노동협정을 이용하여 노동기본권 신장에 관심이 있는 가맹국이라면 각 단계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사실 그러한 능력은 노동협정이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부여한 핵심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맹국은 이러한 기회를 완전히 활용하지 않아 왔으며, 또한 각 단계마다 모순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국가사무국은 노동협정의 완전한 활용을 위해, 새로운 문제점들을 찾아서 진정 사안 검토를 수용하거나 개시할 수 있다. 또한 국가사무국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조, 기업체, 비정부기구, 정부당국, 전문가 등 기타 자료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 국가사무국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조사결과를 공식보고서로 발표하게 된다. 그 결과 조사결과는, 노동협정상의 의무사항이 조사된 진정사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국가사무국의 해석을 통해 노동협정상의 의무조항과 연계됨으로써, 진정사안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셈이다.

국가사무국의 권고사항들은 가맹국 정부들로 하여금 문제점 해결을 위한 목표를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권고사항에 기초해서 국가사무국이 소속된 노동관련 행정부서는 '각료급 협의'로 알려진 피진정 대상국 노동관련 행정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문제해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비록 노동협정은 이러한 각료급 협의에 대해 정부당국의 공식적인 서명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관행은 공식적인 협정으로의 서명절차로 이어지게 되고, 이 협정은 현안이 되는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 계획의 기초가 된다. 위 협정에 대한 후속조치는 실행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안이 되었던 문제점들이 해결

되고 있는지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사무국과 노동관련 부서는 이처럼 진정 사안 심리와, 상세한 보고서 작성 및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입안에 대해 부여된 광범위한 재량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보다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해 소극적으로 임해 왔었다. 그 결과 5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ⅰ) 진정사안 심리과정을 통해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된 문제점이 정부당국에 의해 제기되지 않은 채 사장되고, ii) 진정인의 관심사 또한 무시되며, iii) 진정 사안에 몇몇 조사결과 보고서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실확인 조차 결여된 경우도 있었으며, iv) 노동협정상의 의무사항 해석 범위를 최소화하고, ⅴ) 그 결과, 노동협정상의 진정사안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국 간의 각료급 협정이 진정인에 의해 제기된 노동기본권 문제점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거의, 또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협정상의 의무조항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점은 협약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근거 없는 해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장 터무니없는 해석이 바로 노동협정 의무조항의 위반이 아닌 이의 실행상의 문제점만이 국가사무국의 검토 대상이 되거나 또는 각료급협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노동협정의 모든 면은 검토와 교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협정이 협약문 해석상의 문제와 의문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각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국은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점 및 차이점들을 논의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지 않아 왔던 것이다. 노동협정에는 명시적인 책임소재와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노동협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정치적 압력이 존재해 왔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노동협정은 국가사무국의 1차적인 진정조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 진정인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공식적인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가맹국 정부의 불완전하면서도 소극적 조치에 직면한 진정인은 단지 국가사무국에 재심만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동협력에 관한 북미협정의 가능성 활용

이 보고서에는 2가지 형태의 조사결과와 권고를 담고 있다. 첫 번째는 현재의 노동협정 구조하에서 개선을 통해 노동협정을 좀 더 실질적이면서 효과적인 협약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과 관련된다. 두 번째는 캐나다, 멕시코, 미국 정부가 협약을 활용해 온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 장에는 이에 대한 권고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가맹국이 현재의 노동협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아마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극적인 노동협정 활용, 그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각국 국가사무국이 발행하였던 보고서에서, 그리고 결과와 권고를 제기하는 방식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설령 이러한 우리 인권감시의 주장이 지나친 것이라 할지라도, 국가사무국의 보고서에 기반 해 각료급 협의를 진행한 노동관련 행정부서가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협정에 서명해 왔었다.

이러한 노동협정이 수정되어 더욱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 우리 인권감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는 바 - 노동협정상의 모든 원칙과 의무조항 미이행 시 제재를 수반할 수 있는 수정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가맹 당사국이 이를 확약해야 한다. 물론 가맹 당사국이 사안을 임의로 처리할 수 없도록 3국간에 관

련 규준의 확립과 적용 및 이의 발전이 없다면, 위와 같은 조치는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부록 2】

한일투자협정과 관련된 렌고(일본노총)의 입장[16)]

우리 렌고는 무역, 투자 등의 국제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국민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WTO를 축으로 자유·공정·투명한 다각적 무역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동시에 WTO협정에는 노동기본권의 보장 등의 사회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부와 국제기관에 요청해 왔다.

근년 일본 정부는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투자협정의 체결을 목표로 교섭과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한일투자협정은 1999년 3월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조기체결이 합의되어 2000년 연내 체결을 목표로 교섭이 진행되어 와 2001년 현재 최종조정단계에 들어 있다고 듣고 있다.

렌고는 한일투자협정은 양국의 국민생활의 향상, 고용안정·창출, 환경보전을 촉진해야 하고, 양국 정부가 각국의 내셔날 센터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이해를 얻으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외무성에 현재 교섭중인 한일투자협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렌고의 의견·요망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

16) 본 자료는 2001년 2월 21일 렌고가 당시 렌고회장인 와시오 에츠야 명의로 외무대신에게 제출한 한일투자협정에 관한 요청서를 번역한 것이다. 이 요청서에서 기술되고 있는 내용이 한일투자협정과 관련된 렌고의 기본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1. 본 협정의 교섭에 대한 정보공개, 노조 등 관계자와의 사전 협의의 실시

(1) 양국 정부는 노동, 환경, 소비자보호 등 근로자에 관한 협정 항목에 대해서 조속히 그 교섭내용을 공개한다.

(2) 양국 정부는 노동, 환경, 소비자보호, 서비스자유화 등 근로자의 생활과 고용·노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협정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국의 내셔날 센터 등의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를 실시한다.

2. 본 협정의 목적에 양 국민의 생활향상·개선, 고용안정·창출, 환경보전을 도모할 것을 명기한다.

3. 본 협정에는 이하의 항목을 포함시킨다.

(1) 노동기본권, 노동기준의 확립

양국 정부는 ILO조약·권고에 명시된 국제노동기준, 특히 ILO의 중핵적 노동기준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항(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적용에 관한 조항(제98호)에서 규정된 노동기본권을 정한다.

덧붙여 양국 정부는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제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조약(제105호),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노동자 동일보수에 관한 조약(제100호),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대우에 관한 조약(제111호),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조약(제138호), 최악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및 철폐를 위한 즉각 행동에 관한 조약(제182호)에서 규정된 권리에 대해서도 정한다.

(2) 고용 및 노동

양국 정부는 진출기업에 대해 해당국의 해고규제, 노사협의를 비롯한 노사관행, 능력개발 실시 등의 국내법규, 사회관행을 준수하도록 정한다.

(3)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양국 정부는 진출기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국의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함과 함께 자국에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도 준수하도록 정한다.

(4) 정보공개

양국 정부는 진출기업에 대해 기업활동, 조직, 재무상황, 업적, 또한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도록 정한다.

(5) 환경보전

양국 정부는 진출기업에 대해 환경보전을 위해 상대국의 환경기준을 준수함과 함께 자국에서 적용되는 환경기준도 준수하도록 정한다.

(6) 위반사례의 해소

양국 정부는 협정에 정해진 노동,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노동자 이동 등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양국의 노사공 3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반사례의 해소를 도모한다.

4. “정부는 노동문제 해결에 진지하게 대응한다”는 항목을 굳이 두는 것은 노사분쟁에 정부개입을 초래하는 것으로 공정한 노사

분쟁처리 및 노사관행을 위협하는 바, 본 협정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5. 한국정부가 한국의 내셔날 센터에 본 협정 교섭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하고, 노조의 충분한 이해를 얻으면서 협정작업을 진행하도록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요망한다.

【부록 3】

미-요르단 자유무역협정의 노동관련조항(제6조)[17]

1. 양국은 ILO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노동자 기본권에 대한 ILO 선언 및 그 후속조치를 준수할 것을 재확인한다. 양국은 이러한 노동원칙과 제6항에 명시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이 국내법에 의해 인정되고 보호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양국은 국내 노동법을 완화함으로써 무역을 촉진시키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양국은 상대국과의 무역을 촉진하는 장치로서 국내 노동법을 양허 또는 훼손하거나, 양허 또는 훼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국내 노동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상응하여 노동법 및 규제를

---

17) 2000년 10월 미국과 요르단간에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양자간 무역협정에서는 최초로 노동권 및 환경보호 조항이 협정 '본문' 속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협정 서명 이후 미국 내에서는 노동권 보호조항 삽입과 관련해 찬반 양론이 일었으나---미국노총 및 민주당은 찬성,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영계와 공화당 일부 의원은 반대---결국 2001년 9월 상원에서 승인되고 부시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재가되었다.

채택 또는 수정하는 상대국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양국은 자국법이 제6항에 명시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과 부합되는 노동기준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와 같은 견지에서 이런 기준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a) 양국은 본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 이후, 양국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지속적 혹은 반복적 형태의 작위적 혹은 부작위적 행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그 노동법을 강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b) 양국은 조사, 입건, 규제, 준수문제에 관한 판단을 행사할 권한, 그리고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갖도록 결정되어 있는 다른 노동문제에 관하여 그 실행에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는 문제에 관해 결정할 권한을 각국이 갖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양국은 각국이 일련의 작위적 혹은 부작위적 행동이 이런 판단의 합리적 행사를 반영하거나 혹은 신의에 입각한 자원배분 결정으로부터 초래되는 바 상기 (a)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5. 양국은 상호협력이 노동기준 증진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15조 아래 설치되는 합동위원회는 정상적 회기 동안 그와 관련하여 각국이 규명한 제반 기회를 의제로서 고려한다.

6.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노동법'은 다음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이나 규제 또는 그에 관한 조항을 의미한다.

(a) 결사권
(b)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c) 제반 형태의 강제노동 금지

(d) 취업의 최저연령

(e)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당한 근로조건

〔저자 약력〕

- 주요약력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 사회학과 박사
일본 立敎대 사회학부 박사후기과정(1995-1997)
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 주요저서 및 논문

『노동조합교육의 현황과 과제』 1998
『고용정책·고용보험제도와 노조의 참여』(공저) 1999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변화와 현황』 1999
『작업장 재편과 노조의 대응방향』 1999
『종업원 지주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1999
『노동운동과 숙련·직업능력개발』(공저) 1999
『저숙련체제의 문제점과 숙련지향적 노사관계의 구축방안』 2000
『지식정보화·고용구조·노동운동』 2000

노총연구원 연구서 87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인식과 대응

2001년 12월 12일 인쇄 2001년 12월 23일 발행	
발 행 인	이 남 순
발 행 처 주 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代) 02-782 -3884
등 록	81. 8. 21 (13-31호)
인 쇄	성 문 사 (代) 02 - 2268 - 0520

가격 : 5,000원